

정 관

(2025.3.28. 개정판)

영진약품(주)

제 1 장 총 칙	2
제1조(상호)	2
제2조(목적)	2
제3조(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2
제4조(광고방법)	2
제 2 장 주 식	2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3
제6조(일주의 금액)	3
제7조(주식의 종류)	3
제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3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3
제9조(신주인수권)	4
제9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4
제9조의 3(일반공모증자 등) <삭제 2003.3.14>	5
제9조의 4(주식매수선택권)	5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6
제11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6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6
제 3 장 사 채	7
제13조(사채의 발행)	7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7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8
제15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8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8
제 4 장 주주총회	8
제17조(소집기간)	8
제18조(소집권자)	9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9
제19조의 2(소집지)	9
제20조(의장)	9
제20조의 2(의장의 질서유지권)	9
제21조(주주의 의결권)	10
제22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10

제23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0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10
제25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10
제26조(주주총회 의사록)	10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10
제27조(이사의 수)	11
제28조(이사의 선임)	11
제28조의 2(경영계약의 체결)	11
제28조의 3(경영계약의 이행여부의 평가)	11
제29조(이사의 임기)	12
제29조의 2(이사의 보선)	12
제29조의 3(이사 및 감사의 해임) <삭제 2003.03.14>	12
제30조(대표이사의 선임)	12
제31조(이사의 직무)	12
제31조의2(경영임원)	12
제31조의3(이사의 보고의무)	13
제32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13
제32조의 2(위원회)	13
제32조의 3(감사위원회의 구성)	13
제33조(이사회 결의방법)	14
제34조(이사회 의사록)	14
제35조(감사위원회의 직무)	15
제36조(감사록)	15
제37조(이사 보수 및 퇴직금)	15
제37조의2(상당역 및 고문)	15
제38조(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삭제 2003.03.14>	15
제 6 장 계 산	15
제39조(사업년도)	15
제40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16
제41조(이익금 처분)	16
제41조의 2(이익배당)	16
제42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7
제42조(적용범위)	17

정관

제정1962년 7월 16일, 개정1964년 5월 10일
개정1965년 1월 13일, 개정1967년10월 11일
개정1970년 3월 20일, 개정1972년 2월 22일
개정1973년 2월 1일, 개정1974년 2월 28일
개정1976년 2월 27일, 개정1977년 2월 25일
개정1979년 2월 27일, 개정1982년 2월 27일
개정1983년 2월 26일, 개정1985년 2월 27일
개정1986년 2월 27일, 개정1988년 3월 18일
개정1989년 3월 17일, 개정1990년 3월 16일
개정1994년 3월 11일, 개정1996년 3월 8일
개정1997년 3월 7일, 개정1999년 3월 12일
개정2000년 3월 10일, 개정2000년11월 10일
개정2001년 3월 27일, 개정2002년 3월 15일
개정2003년 3월 14일, 개정2003년12월 19일
개정2004년 3월 29일, 개정2005년 3월 11일
개정2006년 3월 17일, 개정2007년 3월 30일
개정2009년 3월 27일, 개정2010년 3월 26일
개정2013년 3월 29일, 개정2017년 6월 12일
개정2019년 3월 26일, 개정2021년 3월 19일
개정2025년 3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영진약품주식회사 라 한다.
영문으로는 YUNGJIN PHARM.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및 동원료와 화공약품의 제조업, 소분업 및 판매업
2. 건강기능식품, 식료품, 식료품첨가물, 청량음료, 인삼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
<개정 2006.03.17>
3. 화장품, 의약부외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
<개정 2006.03.17>
4.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5. 부동산업
6. 주택의 건설, 매매 및 임대업
7. 공예작물 생산업 및 영림업
8. 주류 판매업
9. 운동장설비 운영업 및 레저 관련 서비스업
10. 방문 및 통신판매,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신설 2006.03.17>
11. 유통업 및 물류관련 사업<신설 2006.03.17>
12. 환경관련 사업<신설 2006.03.17>
13. 전 각 호에 관련한 일체의 사업 및 투자<개정 2006.03.17>

제3조(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 ①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ungjin.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사억주로 한다. <개정 2021.03.19>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6%이상 24% 이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

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개정 2019.03.26>

제9조(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21.03.19>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1.03.19>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합작법인, 기술도입선, 회사의 영업상 안정적 거래선,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투자법인, 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기타 특정한 자(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1.03.19>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개생의 일환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출자전환 또는 신주 대금납입을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개정 2021.03.19>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 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 3(일반공모증자 등) <삭제 2003.3.14>

제9조의 4(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등기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등기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직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까지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03.17>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항 신설 2006.03.17>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542조의 8 제 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 임·직원의 100분의 100미만으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가.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나. 당해 주식의 액면가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06.03.17>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 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개정 2019.03.26>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삭제 2019.3.26>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26., 2025.03.28.>

제 3 장 사 채

제13조(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보증 또는 무보증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1. 전환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합작법인, 기술도입선, 회사의 영업상 안정적 거래선,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 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투자법인의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타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1.03.19>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우선주식으로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며, 그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개정 2006.03.17>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금전으로 환산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합작법인, 기술도입선, 회사의 영업상 안정적 거래선,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자 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투자법인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타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21.03.19>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이를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식, 우선주식으로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며,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개정 2006.03.17>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신설 2019.3.26>
본 회사는 주권,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권,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기간)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9.03.26>

제18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 사장 유고시에는 제31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의 2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 ① 대표이사 사장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대표이사 사장 유고시에는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 2(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22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본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3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주식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케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6조(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제27조(이사의 수)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본항 삭제 2006.03.17>

제28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상법 제363조의2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여 추천한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07.03.30>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03.17>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8조의 2(경영계약의 체결)

- 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자는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안에 따라 비상임 이사의 대표자와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대표자는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안에 대하여 대표이사 사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안에는 대표이사 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 성과평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에는 대표이사 사장은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7.03.30>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의 대표자는 비상임이사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8조의 3(경영계약의 이행여부의 평가)

- ① 이사회는 제2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경영목표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에는 대표이사 사장은 참여할 수 없다.

제29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9조의 2(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한다.

제29조의 3(이사 및 감사의 해임) <삭제 2003.03.14>

제30조(대표이사의 선임)

이사회는 결의에 의하여 상임이사 중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한다.<신설 2007.03.30>

제31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 사장은 본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반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일상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 사장의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의2(경영임원)

- ① 본 회사는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경영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3.29>
- ② 제1항에 의한 경영임원은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경영임원은 대표이사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개정 2013.3.29>
- ③ 경영임원의 보수와 상여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3.3.29>

제31조의3(이사의 보고의무)

- ①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3.17>

제32조(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에 의하여 대표이사 사장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이 배제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7.03.30>
-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03.28.>

제32조의 2(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 결의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2조, 제 33조, 제 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6.03.17>

제32조의 3(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9>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1.03.19>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신설 2021.03.19>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1.03.19>
-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06.03.17.>
- ⑧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본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03.19>

제33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이 된다. 다만, 대표이사 사장이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4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5조(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개정 2019.03.26>
- ③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술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6.03.17>
- ⑥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제36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03.17>

제37조(이사 보수 및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대표이사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 결의에 대표이사 사장과 상임이사는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6.03.17>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7조의2(상당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당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8조(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삭제 2003.03.14>

제 6 장 계 산

제39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3.17>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3.17>
- ③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의 각호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점에 5년 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 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호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익금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41조의 2(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8.>

제42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43조(적용범위)

본 정관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또는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제 7 장 부 칙

부칙 (2003년 3월 14일)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년 12월 19일)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년 3월 29일)

1.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사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대표이사 사장 및 이사는 본 개정 정관 제28조 제1항에 의한 주주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경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대표이사 사장은 제42기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표이사 사장이 배제된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안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대표자와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5년 3월 11일)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 3월 17일)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1항의 단서 추가 사항 및 제9조의4 제2항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년 3월 30일)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년 3월 27일)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년 3월 26일)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개정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년 3월 29일)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년 6월 12일)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3월 26일)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5조의2 개정내용은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년 3월 19일)

(시행일) 이 정관은 제5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년 3월 28일)

(시행일) 이 정관은 제6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